

■ 화제의 뉴스 ■

2. 법원 “발코니공사대금 횡령죄 성립을 위하여는 그 사용 용도와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야”

법원은 주택조합장 등이 별도의 발코니계좌로 입금 받은 발코니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,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한 자금의 집행이라 하더라도 그 당초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, 법령상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특정자금의 회계가 다른 자금의 회계와 구분되어 다른 자금의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위탁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약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, 해당 사건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, 조합규약, 해당 계좌의 지출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당 금액이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.

[관련 기사]

- 법원 “공사자금, 용도 엄격 제한 없다면 떼도 써도 횡령 안돼” - 헤럴드경제 | 2012. 4. 24.
- 서울고법 “발코니 공사비 다른 공사에 써도 아파트 사업에 썼다면 횡령 안돼” - 파이낸셜뉴스 | 2012. 4. 24.

[관련 판례]

- 서울고등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노3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 판결